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대통령경호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징계 재심사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 재심사 청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 1)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음
- 2) 「공무원 징계령」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징계 재심사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징계 재심사 절차의 명확화(안 제30조 및 제30조의 2)

1) 징계위원회 관할 범위 및 재심사 청구 절차 명확화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안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0조의2 제3항)

2) 징계 재심사시 위원 교체로 공정성 확보(안 제30조의2 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6. 11. ~ 07. 09.)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사
· 의결한다.

1.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의 징계등 사건
3.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바목에 따른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4. 6급 이하 직원(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
5. 제30조의2에 따라 청구된 심사 또는 재심사 사건

②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사·의결한다.

1.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경징계가 요구된 사건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이하 “경징계등 사건”이라 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
3.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사목에 따른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재심사 등 청구)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 :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2.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 :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청구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가 당초 심의·의결 당시 구성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징계의결등 심사(재

심사) 청구서에 징계등 의결서 사본과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제31조 중 “제25조”를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징계위원회의 관할·운영 등) ①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을 심사·의결한다.	제30조(징계위원회의 관할·운영 등) ①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사·의결한다. 1.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의 징계등 사건 3.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바목에 따른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4. 6급 이하 직원(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

②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
사·의결한다.

③ (생략)
<신설>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

5. 제30조의2에 따라 청구된 심
사 또는 재심사 사건

②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건을 심사·의결한다.

1.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경징계
가 요구된 사건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이하
“경징계등 사건”이라 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
항제3호마목에 따른 다급 이
하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
하는 임기제직원에 대한 경징
계등 사건

3.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
항제3호사목에 따른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
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
원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재심사 등 청구) ① 징
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
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또는 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 :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2.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 :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청구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가 당초 심의·의결 당시 구성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 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과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u>제25조</u>를 준용한다.	<u>지</u>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 <u>유 및 입증방법</u> 3.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u>따른 여러 정상</u>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 ----- ----- ----- ----- <u>제23조 및 제25조</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	
연 락 처	(02) 770 - 5511